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2005. 9. 12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查經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5년 8월 25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다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2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15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5년 9월 5일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유근)

가. 제정이유

-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의 이용·생활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지원대상 (안 제2조)

-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(양로·요양여가시설·재가시설·노인보호 전문기관)
- 노인의 날 등 기념행사 및 행사참여자
- 수급친노인·차 상위계층 노인·독거노인·기타 저소득노인

○ 지원내용 (안 제3조)

-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
-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
-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
-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·노인의 날·설날·추석 등 특별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경비
- 어버이날·노인의 날 등의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
- 노인복지시설 및 수급친노인·차 상위계층 노인·독거노인·기타 저소득노인에 대하여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이 날식)

- 본 조례 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우리구의 세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·방법·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인복지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조례 안으로.
- 안 제2조에 지원대상에는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(양로·요양여가시설 등). 노인의 날 등 기념행사 및 행사참여자, 수급친노인·차 상위체중노인·기타 저소득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.
- 안 제3조에 지원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·난방비,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, 어버이날·노인의 날 등의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, 노인복지시설 및 수급친 노인·차 상위체중 노인·기타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(안)

의 안
번 호

173

제출년월일 : 2005. 8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므로 지원대상·지원내용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급변하는 복지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(안 제2조)

-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(양로요양·여가시설·재가시설·노인보호전문기관)
-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버이날·노인의 날·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행사참여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노인 및 차상위계층노인·독거노인·기타 저소득노인

나. 지원내용(안 제3조)

-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·난방비
-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
- 노인복지시설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
-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·노인의 날·경로의 달·설날·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경비 등
- 어버이날, 노인의 날, 경로의 달 등 각종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
- 노인복지시설 및 수급권노인, 차상위계층노인, 독거노인, 기타 저소득노인에 대하여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노인복지법(1997.8.22. 개정, 법률 제5359호)
- 노인복지법시행령(1998.6.20. 개정, 대통령령 제15813호)
-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안

[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2005-2(2005.1.7)호 관련]
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임법예고(2005.07.21 ~ 2005.08.10)결과 : 의견 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·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(양로·요양·여가시설·재가시설·노인보호전문기관)
2.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버이날·노인의 날·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행사참여자
3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노인 및 차상위계층노인·독거노인·기타 저소득노인

제3조(지원내용) ①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·난방비
 2.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
 3. 노인복지시설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
 4.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·노인의 날·경로의 달·설날·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경비 등
- ②제2조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각종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또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구청장은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